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65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3일
발의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3. 7. 24일 김혜지 의원(찬성자43명)이 발의하여 2023. 8.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제962호)과 2023. 7. 26일 김용호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찬성자33명)하여 2023. 8.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제963호)을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3.9.13.)에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의안번호 제962호 조례안의 화재예방 대상과 지원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의안번호 제963호의 경우 안전시설의 세부사항 규정 등이 일

부 보완이 필요한 바,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실성과 타당성 그리고 조례체계 측면에서 일부 보완·수정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 (안 제명)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관계인”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4조)
-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기관 및 전용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의 안전시

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함. (안 제5조)

-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안전시설 지원과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 (안 제6조)
- 시장에게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부칙 시행일을 2024. 7. 1.일로 함. (안 부칙)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